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1853호

붙임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p> <p>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p> <p>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p> <p>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p> <p>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p>

현 행	개 정 안
<u>제6조</u> ~ <u>제10조</u> (생 략)	<p><u>수 있다.</u></p> <p><u>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u></p> <p><u>제7조</u> ~ <u>제11조</u> (현행 제6조부터 제10 조까지와 같음)</p>